

[일련번호 : 19]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통장후보자 심사 선정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통장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본표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를 집계하여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며, 통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를 원칙으로 하되,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통장 후보자 심사·선정 시 심사표에 총계점수가 불일치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부적정하게 채점하였음에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채 심사를 완료하는 등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선정여부 영향 없음)

[표] 통장후보자 심사 선정 서류 부적정 현황 - 세부내역 별도통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통장후보자 심사·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